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 도입〉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6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1. 7.
3. 회 부 일: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1항).
- 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
- 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5조의2제5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가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증거에 대한 보전 요청 제도를 신설하였음(안 제215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긴급 보전요청을 하되 검사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압수 또는 통신사실확인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215조의2제2항부터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15조의2(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u>

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접속 기록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이하 “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아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제2항에 따라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전을 서면(이하

“긴급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전을 요청한 경우
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
에는 즉시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
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즉시 당해 정보가 삭제
·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
하고, 정보를 보전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
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당
해 정보에 관해 압수 또는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전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전기
간 내 보전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통신비밀보호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청이 취소된 경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을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요청서 또는 긴급보전요청서를
직접 제시·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송부
하는 방법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보전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에도 같다.

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실 및
보전된 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와 같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므로,¹⁾ 증거로 쓰일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이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어 그 사이 전자정보가 원격으로 변경·삭제되어 증거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증거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 현행법상 증거보전제도(형사소송법 제184조)²⁾를 고려할 수 있음. 다만, 동 제도는 판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발부하기까지의 시간소요로 해당 증거보존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발부 전에도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보전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격으로 쉽게 변경·삭제가 가능한 전자정보의 증거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됨.

1)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그 범죄의 증거 또한 전자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임. 전자정보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존재하지 않아 증거훼손이 용이하고, 원격으로 쉽게 변경·삭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증거로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 단계에서 긴급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³⁾⁴⁾

한편,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⁵⁾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2022년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⁶⁾(이하 “협약”)에 가입하고자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2월 가입 초청을 받았음.

3) 권양섭,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2010, P. 357.

4) 경찰의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2019년 180,499건에서 2023년 241,842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발생 대비 검거율은 2019년 73.4%에서 2023년 5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건)	180,499	234,098	217,807	230,355	241,842
사이버범죄 검거건수(건)	132,559	157,909	138,710	143,885	138,171
사이버범죄 검거율(%)	73.4	67.5	63.7	62.5	57.1

*자료: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5) 사이버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제3국에 서버를 두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6)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되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30개국이 서명에 참가하여 2004년 7월 발효되었으며, 현 가입국 미·일·호주 등 총 67개국임. 협약은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범죄 처벌대상 정의, △협약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외교부 보도자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2022. 10. 11.)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제16조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1.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포함한 특정한 컴퓨터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국은 이러한 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을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입국은 어떤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저장된 컴퓨터데이터를 보존하도록 명령을 통하여 요구함으로써 제1항을 실행한다면, 가입국은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최장 90일 동안 그 자가 이러한 컴퓨터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이를 권한 있는 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명령이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각 가입국은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의 수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보관자 또는 컴퓨터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신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일부 제출)

1. 각 가입국은 제16조에 의하여 보존될 통신데이터와 관련하여,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이 통신의 중개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통신데이터의 신속한 보존이 가능하고, b) 가입국이 서비스제공자 및 통신의 전송 경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량의 통신데이터가 가입국의 관할기관이나 이 기관으로부터 지명 받은 자에게 즉시 제출(공개)되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 조에 의한 권한과 절차는 제14조와 제15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약 제16조 및 제17조는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된 컴퓨터데이터가 특히 손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등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보전요청 제도를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또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전자정보 긴급보전과 관련하여 제18대 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바, 각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839)은 법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⁷⁾

제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839)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6條(押收) ① (생략) ②法院은 押收할 物件을 指定하여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提出을 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第106條(押收)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압수의 목적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조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고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보전을 명할----- 이 경우 보전기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거나 압수의 목적물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60일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839, 2001352)은 법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08조의2).⁸⁾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939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직접 압수·수색·검증의 긴급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16조의2).⁹⁾

문 의 처
02)6788-5063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3878, 20013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8조의2(정보의 보존요청 등) ① 법원은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존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9)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3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6조의2(전자정보 긴급보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전자정보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긴급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